

자선사업법에 대한 안내

자선사업법의 소개

2005년 4월 '2005 자선사업법'(이하 자선사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선사업법에 따라 자선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1. 자선단체의 등록과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 유지하며;
2. 자선단체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자선사업 부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등록 체계는 '자선단체 등록부'(이하 등록부)로 불리우는데, 등록부는 자선단체의 실질적인 등록이 시작되는 2007년 2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등록을 원하는 단체들에게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

정부 부처인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부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장관이 임명한 이사회가 위원회를 통제합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위원회의 일반 업무를 책임 관장합니다.

국가 기관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ACE)입니다.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란 정부조직으로부터 간섭은 받지 않되 관할부처의 장관이 지시한 정부 정책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선사업법의 사본은 웹사이트 www.legislation.govt.nz 에서 열람 가능하며, 베네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자선사업법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단체가 되기 위한 등록 신청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
2. 자선단체가 제출한 연차보고서의 검토
3. 자선사업 부문에 관련된 사안들을 관계 정부기관에 보고 및 제안
4. 자선사업 부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 확립
5. 자선사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발판 마련
6. 자선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교육
7. 자선사업 부문에 대한 연구 촉진 및 지원

공공의 신뢰 및 자신감 확립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자선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자선단체의 투명한 경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이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선사업단체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의 등록과 관리는 자선단체들이 당초의 설립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 및 지원

위원회의 조언과 지원은 자선단체로서의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자선단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자선 부문에 대한 조언을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등록 절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커뮤니티의 주요 연락망과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널리 공표될 것입니다.

등록해야 하는 이유

자선단체로서의 등록은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자선단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금 면제 자격 부여

2004년 소득세법과 1968년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된 자선단체들만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자격이란 등록된 자선단체들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등록된 자선단체들에 기부한 사람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자선단체 기부자로서의 자격은 개정법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2. 자선단체 등록부

일반 대중은 등록부를 온라인 www.charities.govt.nz 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3. 등록번호 소유

위원회가 등록된 자선단체에게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선단체는 홍보물에 해당 등록번호를 명기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번호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자선단체는 자선사업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만족시켜 등록되었음을 일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4. 자선부문에 대한 정보

등록함으로써 해당 자선단체는 뉴질랜드의 자선사업 부문에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선단체는 위원회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선사업 부문에 대한 교육과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5. 위원회의 연례회의 참석

등록된 자선단체들은 위원회가 주최하는 연례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연례회의에서 자선단체들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자선 재단과 법인 단체들의 등록 필요성

자선 재단이나 법인 단체로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세금 면제 자격을 부여받거나 그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며 정식 자선단체로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면 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대상

다음의 단체는 자선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단체가:

1.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다면;
2.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3. 자선사업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면;
4. 자선단체의 모든 임원진들이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단체 등록을 위한 조항

여러 자선단체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취급하는 규정이 자선사업법의 조항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 위원회가 아래 사항들에 대해 만족할 경우, 단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단체내에 소속된 각 조직체 하나하나가 자선단체로서의 등록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리고
2. 모든 조직체들이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3. 전체 그룹을 구성하는 부분들로서 각각의 조직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알맞을 때.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각 조직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비슷한 자선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선 목적’에 대한 정의

위원회는 자선 목적을 판단하는데 뿌리깊은 상식을 근거로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 잣대를 통하여 해당 자선단체가 아래 중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교육의 증진;
- 종교의 계몽;
- 빈곤 추방; 또는
- 지역사회에 혜택이 되는 다른 형태의 노력.

궁극적으로 자선단체가 지향하는 근본 목표는 공공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공 이익을 판단하는 잣대).

자선단체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부로서 옹호단체나 변호단체와 같이 차선적 또는 보완적으로 비자선적인 활동을 한다고해서, 자선단체로서의 등록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

자선단체가 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위원회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 단체의 규칙, 정관, 재단 증서 또는 동종의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 단체의 현재 자선활동의 현황 및 향후 자선 활동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 단체의 임원진들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자선단체는 다음 사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 지정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차 보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단체의 내부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동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선단체들의 등록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1.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2. 자선 등록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3. 자선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자선사업법의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요건의 집행

등록된 자선단체가 자선사업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행정 제재;
- 경고 통지서 발부;
- 비준수사항의 실태 공표;
- 추가 조사의 집행; 그리고
- 법규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해당 자선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등록 자선단체가 그들이 내세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는지와 자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등록 방법과 시기

등록부는 2007년 2월 1일부터 자선단체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등록부가 운영되기 전, 철저한 사전 검사와 시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등록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될 것입니다.

기존의 자선단체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7월 1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자선단체들은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기재한 후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자선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등록 비용

등록 신청비는 자선단체들에게 무료입니다.

연차 보고서 신고 비용

연간 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자선단체가 연차 보고서를 신고하는데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고: 50달러
2. 서류 신고: 75달러

연간 총 수익이 1만달러 미만일 경우, 연차 보고서 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납세 의무

국세청은 세입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자선단체의 면세 혜택 자격이 지속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 환불과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도 함께 가집니다.(기부를 받는 입장에서)

국세청과 위원회는 세입법과 자선사업법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상호 협력합니다. 합리적일 경우, 자선단체의 위원회에 등록하면 세금 면제가 되도록 절차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선단체는 면세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위원회에 대한 세부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인 **www.charities.govt.nz**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원회의 무료 전화 0508 CHARITIES 즉 (0508) 242 748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라인을 요청하시면, 귀하의 모국어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최신정보를 얻으려면 귀하의 이름과 귀하가 속한 단체, 그리고 귀하의 연락처를 **info@charities.govt.nz**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선사업법의 사본은 **www.legislation.govt.nz** 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베네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